

기계기구 및 건설심의위원회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기계기구 및 건설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라 한다)의 기능 ,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. 단 총무처장 께위 시 총장이 지명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(임기)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하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 4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.]

1. 본교 비품, 장비, 기계기구 등의 구매에 관한 사항
2. 본교 건축물 유지보수 및 일반공사 결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②1항 1호 내지 3호의 비품, 장비, 기계기구 구매와 일반건축물 유지보수 공사금액(단가기준)이 1,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.

제 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